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이 약관은 예금주와 중국농업은행(이하“은행”이라 한다)과의 외화예금거래에 적용되며 은행은 이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하고 예금주는 영업시간중 언제나 이 약관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 장 공통사항

제 1 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다음 각호의 거래에 적용하기로 한다.

1. 외화보통예금
2. 외화당좌예금
3. 외화정기예금

제 2 조 지급시기

- ① 외화보통예금 및 외화당좌예금은 예금주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 ② 외화정기예금은 만기일 이후 또는 거치기간 경과 후 예금주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 예금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는 그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 3 조 이자계산

외화예금 이자의 연간일수는 360일(단, GBP는 365일)로 적용하여 예금통화의 보조단위까지 계산하며 보조단위 미만은 버린다.

제 4 조 적용환율 및 수수료

- ①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하는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고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로 한다. 다만, 미국 달러화 외화현금을 대가로 외화예금에 입금할 때 외화현금수수료를 면제한 경우로서 입금일부터 7일 이내에 원화를 대가로 출금하는 경우에는 대고객 현찰매입률을 적용한다.
- ② 미국달러화 이외의 외화현금을 외화예금에 입금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예금주가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
- ③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현금으로 인출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예금주가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
- ④ 은행은 제 ①②③항과 관련한 적용환율을 영업장에 게시토록 한다.

제 5 조 약관의 적용

외화예금거래에는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본 약관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예금거래기본약관, 은행의 외화예금 관련규정의 순서로 적용된다.

제 2 장 외화보통예금

제 6 조 이자

- ① 이 예금의 이자는 매년 4월, 10월 마지막 영업일을 이자결산 기준일로 삼아 익 영업일(이하 “원가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한다.
- ② 이 예금의 이자는 처음 예금일 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은행이

고시한 이율로 셈한다.

제 3 장 외화당좌예금

제 7 조 지급특례

은행은 예금주의 수표·지급청구서 없이 이 예금을 예금주의 은행에 대한 다음 각호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1. 각종이자, 지연배상금, 보증료, 수수료
2. 수입어음원금, 외화표시 내국신용장결제대금, 수출환어음 및 외화수표 부도대금
3. 기타 대체결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채무

제 8 조 이자

이 예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준용

수표용지교부, 수표금지급과 지급위탁취소, 지급자금부족시의 처리, 수표초과지급과 일부지급거절, 수표금 지급과 면책 등, 해지, 해지후 처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제 4 장 외화정기예금

제 10조 계약기간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연, 월단위로 정한다.

제 11조 만기일 산정

기간을 정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달의 예입일에 해당하는 날을 만기일로 하되 마지막 달에 예입일에 해당하는 날이 없는 경우는 그 달의 마지

막 날을 만기일로 한다.

제 12 조 이자

- ① 이 예금이자 는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입금일 당시 약정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 ② 만기일후 청구할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당시 약정이율의 3/10을 만기 후 이율로 셈한 후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 ③ 만기일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급 청구할 때는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이 정하는 중도해지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가 있는 때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중도해지 이율은 예수기간에 따라 7일 미만은 무이자, 7일 이상 1월 미만은 가입당시 약정이율의 1/100, 1월 이상 6월 미만은 가입당시 약정이율의 4/10, 6월 이상은 가입당시 약정이율의 5/10로 한다.